

第 33 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94. 1. 13~1. 14)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1. 제3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개회식.....	3
2. 제3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1
3. 제3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3
4. 부 록	
가) 의사일정(안).....	37
나) 1994년도 주요업무계획.....	39
다)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0

본 회 의 회 의 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

1994년 1월 13일 (목요일) 14시 00분

제3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개회식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
5. 개회사(의장)
6. 교육감 인사
7. 폐식

(사회 : 의사과장 강인형)

(14시 00분 개식)

● 의사과장 강인형

지금부터 제3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

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녹음된 반주에 따라 1절만 제창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
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
니다.

개 회 사

(14시 03분)

● 의장 김영세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정인영 교육
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그리
고 이 자리에 방청하신 언론계 인사
여러분!

오늘은 갑술년 새해의 첫번째로 맞
이하는 제33회 본도교육위원회 임시
회가 개최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 어느때보다도 국가의 진운이 국
제화, 개방화로 활기차게 전개될 것
으로 예상되는 희망찬 새해입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위원들께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3, 14 양일간의 회
기로 교육감님의 인사말씀과 새해의
중요한 업무를 듣게 되겠으며, 충청
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
례안, 교동국민학교이전계획안, 그리
고 '95학년도 국·중학교설립계획변
경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되
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 그리고 교육감
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난 해 우리는 엄청난 개혁의 격
동속에서 역사의 한장을 넘겼으며 활
기찬 선진 충북교육의 발전과 그 정
립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

열린 교육, 열린 행정을 통한 학교
교육의 본질회복에 주체적으로 힘써
왔고, 지방교육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통한 본도 교육의 도약을 위해서 또
한 심혈을 기울였으며 획일주의의 불
식과 도민의 올바른 교육의식, 그리
고 21세기의 대비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일시적이거나 도

의회와의 불협화음때문에 교육활동의 위축이 걱정되었지만, 이제 새해 새 출발과 더불어 모두 털어버리시고 사심없는 교육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교육위원으로서의 의연한 자세로 귀감을 보여주시고 오직 충북교육의 발전이란 소명과 학부모의 기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계적 상황은 총체적인 국제화, 개방화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고 세계주의에 입각한 국제적 새질서가 새롭게 구축될 것이며 국가간에 치열한 경제전쟁·기술전쟁은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국가간에 치열한 1대1의 무한 경쟁시대를 예고한 혁명적 상황이 도래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교육도 이에 대한 총체적 대책을 수립하고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켜 이 치열한 경쟁속에서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한국인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획일적 교육환경을 과감히 탈피하고 입시위주교육을 혁신하여, 열악한

교육여건의 개선 그리고 교육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교육관속에 우리는 우리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교육의 본질에 더욱 충실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잘못된 현행 교육자치제도의 개혁에 총력을 경주하여 금년에는 기필코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한 교육자치의 뿌리를 제대로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며 특색있는 지방교육의 다양화·다원화될 수 있도록 초대 교육위원으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방교육자치의 튼튼한 뿌리속에 150만 도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본도의 큰 교육이 이룩되고 국제화, 개방화에 대한 대처에도 또한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첫번 회기를 맞이하여 더욱 높은 사명감으로 부여된 소임에 전심 전력하여주시고, 금년에는 심도있는 의정활동과 의안심의를 통하여 우리의 교육가족과 150만 도민의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본도 교육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성숙된 전문인의 전문적 활동이며, 법과 제도는 우리의 교육활동이 활기차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교육에 맞추어야 되는 장치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도 시종여일하게 심도있는 의정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고,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화목한 가운데 우리의 말은 바 소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열정을 모아 기대에 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께서도 본도의 교육선진화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도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동지와 도민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삼가 개회사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과장 강인형

다음은 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육감인사

(14시 11분)

● 교육감 정인영

존경하는 김영세의장님과 위원님!
희망찬 94년 새해를 맞이하여 보다 보람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면서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94년의 충북교육의 주요업무계획은 부교육감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본인은 '94년을 "신뢰받는 교육의 해"로 정하고 그 실천과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마련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94년을 "신뢰받는 교육의 해"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자는 만인으로부터 신뢰받는 것을 큰 보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역인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면 신뢰받지 못합니다.

한 나라의 상태는 그 나라의 학교에서 어떤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가를 보면은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교육자는 교육발전이 지역발전에 연계된다는 인식아래 큰 뜻과 강한 힘을 모아 더욱 새롭고 알찬 충북교육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실천과제를 다섯가지로 정하였습니다.

첫째가 학교장의 투철한 교육관 정립을 통해서 학교운영을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의 전문성, 자율성에 바탕을 둔 경쟁적인 학교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연두기자회견에서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강조를 하셨고 경쟁력이 강화되자면 창조가 경쟁력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학교교육에 있어서 중심이 학교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보장을 함으로써 서로 선의의 경쟁하에서 특색있는 학교 발전이 이룩되도록 최대의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가 존경과 믿음을 주는 바람직한 교사상이 정립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교사들은 부단한 자기 연찬과 개발을 통한 자질함양과 학생 지도력이 향상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교사의 기능을 본인은 두가지로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교과 연구를 열심히 하는 자세, 하나는 학생 지도력을 향상시키는 자세, 교과연구를 게을리해서는 학생지도력이 향상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두가지가 성실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바람직한 교사로서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번째는 지방화 시대, 교육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사회 학교로서의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학교가 담당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어느 교장이 어느 학교에 발령을 나면은 그날서부터 그 지역의 사람이 되어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사회의 행사에 참여한다고 해서 어떠한 모임에 앉았다만 오는 이와 같은 자세가 아니라 그 지역의 특

성을 빨리 이해를 하고서 지역 개발 문제라든지, 지역의 정보, 문화, 예술 문제라든지 또는 주민의 복지문제 등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고 좋은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구성원을 볼 때에 다양한 전공 분야별로의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영역이든 간에 학교 집단에서는 그 지역문제를 슬기롭고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본인 나름대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학교장은 그 지역의 지도적인 인사임을 자각해서 언제나 그 고장에 상주하도록 보다 더 강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가 학교의 불합리한 관행을 쇠신해서 교직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여러가지 잔존부조리 일소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의 실적을 보더라도 자신있게 근절이 되었다고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 수가 없는 이와 같은 실정입

니다.

이 불합리한 관행을 일소하는 사업은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교직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수 학습의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하고도 편리한 교육여건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교육시설이 현대화되지 않고서는 보다 합리적인 교육활동을 기대할 수 없고 또한 교육의 질의 향상도 기대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적인 교육시설이야말로 신뢰받고 교육을 발전시키는 하나의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강력히 교육여건 개선에 전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저희들의 의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서 적극 지도편달해주시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인사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정인영 교육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과장 강인형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14시 20분 폐식)

본 회의 회의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록

1994년 1월 13일 (목요일) 14시 20분

의사일정 (제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3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9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3.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경과보고
2. 제3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9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부교육감)
4.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14시 20분 개의)

● 의장 김영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경과보고

(14시 21분)

● 의사과장 강인형

의사과장 강인형입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 및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94년 1월 5일 교육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2회 임시회 의결안건 처리입니다.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5건의 의결의안을 93년 12월11일 집행기관에 이송하였고, 제97회 충청북도의회에 제출된 의안중 '94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은 수정의결되었으며 충청북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3년도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중학교학구에 관한 폐지조례안, 고등학교학교군설정에관한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어 공포되었습니다.

금번회기에는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교동국민학교이전계획안, '95학년도 학교설립계획변경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는 '93년 12월 18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미 각 위원님께 배포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홍신회위원님께서서는 교육부출장으로 이번 회기에 불참신고를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3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22분)

● 의장 김영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통보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제3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1월 13일부터 1월14일까지 2일간으로 하여 충청북도교육청의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3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1월 13일부터 1월 14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14시 23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발언대로 나옴)

● 부교육감 박동기

부교육감 박동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세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국제화, 세계화로 향하는 갑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보다 큰 영광과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지난해에는 교육의 병리를 치유하는 시련속에서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 도덕적기틀을 다지는 한해가 되도록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1994년의 교육은 좀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체제로 돌입하는 세계의 흐름속에 국가경쟁력 강화에 주축이된 인재육성과 충북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키워줄 제6차 교육과정의 개발 등 보다 크고 힘든 과제들이 당면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국제사회에서 앞서갈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려면은 먼저 교육자가 만인으로부터 신뢰받아야 하며 신뢰를 받을 때만이 교육의 효과가 크다고 보아 우리도에서는 올해를 "신뢰받는 교육의 해"로 정하고 교육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교육가족이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교육청의 '9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충북교육의 기본방향, 그리고 '94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우리 충북교육은 "21세기를 주도할

자주·창의·도덕적인 건강한 한국인
육성"을 목표로 하여 학교운영의 전
문성, 자율성보장으로 교육발전을 이
룩하고 선진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한 전인교육을 실현하며 21
세기 국제화사회를 주도할 인재양성
을 위한 수월성 교육을 강화하며 그
리고 학습활동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교육여건조성을 교육시책으로 정하였
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
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학교운영에 전문성, 자율
성보장으로 교육발전을 이룩하고자합
니다.

학교장이 투철한 교육관에 의한 지
도성 발휘와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위
해서 학교운영에 대한 각급 학교장
및 교감 연찬회를 개최하여 민주적
지도성이 발휘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를 신뢰받는 교육의 해로 정하
여 이를 정착시키고자 교직원의 공동
체의식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의식
전환 간담회를 개최하여 발전적인 사
고와 연구하는 자세를 확립하고자 합

니다.

또한 성실하게 노력하는 교직원이
우대받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존경받
고 사도를 실천하고, 성실한 교원을
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장 중심의 자율행정,
인화중심의 민주행정, 현장우선의 지
원행정을 실현하고자 창의성의 발휘
와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를 확립하겠
습니다.

화합과 협력하는 분위기의 조성
과 의사결정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도록하
는 한편, 교단중심의 지원체제도 확
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존경, 협력하는 인간관계속에
서 기획·재정·인사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공동사고를 통하여 학교운영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며, 건전
한 교육재정운영으로 낭비적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고 인사자문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인사관리가 되도록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선진민주시민으로서의 자
질함양을 위한 전인교육의 실현입니
다.

인간성 회복과 건전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도덕성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질제교육의 실천을 위해 예절교육은 기본생활 습관지도를 철저히 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경제교육은 근검·저축을 생활화하여 선진경제국의 도약기틀을 조성하며, 질서교육은 준법정신을 고취하여 학교·가정·사회에서 자율적 실천력을 육성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건전한 학생문화 정착을 통하여 바른 가치관이 형성되도록 참된 삶에 대한 자립의지를 배양하고 각종 수련활동을 활성화해나가겠습니다.

민족자존의식을 고양시키고자 나라사랑 교육을 철저히 하고 선비정신과 중원문화정신을 계승·발전시키며 가정의 교육적 기능회복을 위해서 매주 토요일은 가정의 날로 지정 운영해나가겠습니다.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창의적인 교육과정운영과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으로 토의학습, 탐구학습, 노작학습을 일반화하고 자율적 학습능력을 배양시키겠습니다.

1교1기 및 1인1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의 내실을 기하며 평가방법을 다양화하는 한편 독서문화를 정착시켜 학생들의 사고력과 탐구력을 기르는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이해시키고 통일의를 심어주는 교육으로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타인의사를 존중하는 교육과 북한실상의 이해, 민족화합과 동질성 회복교육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21세기 국제화사회를 주도할 인재양성을 위한 수월성교육의 강화입니다.

학생들의 적성과 소질을 바로 알고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위하여 개인의 잠재능력을 조기발견하여 특수재능아는 국·중·고교로 연계지도하며, 특수목적 고등학교운영에 내실을 기해나가겠습니다.

고도 산업사회에 부응하는 과학기

술인 양성을 위하여 실험실습에 철저
를 기하고 학교과학관 2년차분을 5개
소에 건립하겠습니다.

컴퓨터교육을 강화하고, 외국어 교
육을 활성화하며 특히 우루과이 라운
드 대응교육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기숙사급식부터 우리 농산
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
습니다.

모든 학교가 특색있게 발전되도록
육성하고 학생진로선택의 폭을 확대
해나가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색있는 학교를 육성하고 진
로교육을 충실히 하며 사회교육기관
의 기능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교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
도록 하고 연수방법의 개선과 연수기
회의 확대로 학생지도력이 향상되
도록 하겠습니다.

장학활동이 내실화되도록 교내에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고 자기장학·동
료장학이 충실히 되도록 하며 자질향
상을 위하여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연

수방법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교원석사과정 특별연수를 위
하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에 87명
을 특별연수차원으로 파견하였습니다

내재로 학습활동에 도움을 주는 다
양한 교육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
다.

교육시설 사업을 할 때에는 그 시
설을 사용하게 될 관련 교직원의 의
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쾌적하고 편리
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교육활
동을 생각하는 교육환경이 조성되도
록 교실 중·개축, 조도개선, 화장실
의 개량·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존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연을 살리는 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환경정화의 날로 지
정, 운영하며 학교급식의 확대실시와
양질의 급수로 학생들의 보건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교수·학습에 불편함이 없도록 질
높은 학습기자재를 확보하도록 학습
기자재 구입비를 증액지원하고 과학
기술 실험실습실 및 교구를 확충하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정보센터 시범교육청을 운영하여 교수·학습지원에 충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의 통폐합, 재배치, 신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학교신설은 국민학교 2, 중학교 1, 고등학교 1개교를 '94년 3월 1일에 개교하도록 하고 사립학교의 교육여건이 개선되도록 재정결함보조를 지원하여 공사립간의 균형발전을 유지하도록 하며 사립학교의 교원에 대한 명예퇴직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행정장비를 계속지원하는 한편 교육행정업무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교원업무경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알찬교육의 결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있으시길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영세
예, 박동기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199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여러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회기관계로 다음 2월 초순에 개최할 예정인 다음 회기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때에 심도있는 이런 질문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37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재정결함액 및 특수교육진흥비의 사

업종료보고 방법을 개선하여 사립학교의 자율성신장과 재정에 관한 책임성 확보 및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영도모와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을 기준재정수입액 및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하여 부족분을 전액 지원하고 회계년도 말에 정산을 하여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조치를 하였으나 개선안으로는 현행방법에서 재정수요액 중 교직원 인건비를 제외한 학교운영비에 대해서는 정산보고를 받지 않고 집행잔액을 학교장이 다음년도 예산으로 이월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근거는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와 금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한 것입니다.

3쪽에서 5쪽까지는 개정된 조례안으로 설명은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할까 합니다.

● 의장 김영세

예, 위원님들 양해하시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좋습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감사합니다.

그러면 9쪽의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한 난의 제2조는 신설조항으로서 재정결함액 특수교육진흥비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설명한 것이며 제3조는 조문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10쪽의 제4조는 신설조항으로 보조대상사업을 명시한 규정으로 첫째, 재정결함액 보조사업, 둘째, 특수교육진흥을 위한 사업, 셋째, 실업계학 교의 실험실습교육지원을 위한 사업 넷째,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다섯째, 기타교육감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제5조는 조문을 보완한 것이며 11쪽 상단 제5조 3항은 신설조항으로서 교육감은 전항에 의하여 보조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사업으로 변경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행정절차의 보완이며 이하 조문의 자구를 정리한 것입니다.

12쪽의 중간을 보시면 제8조 1항 1호의 단서규정은 2호의 단서규정과 체계를 맞추기 위하여 자구를 보완한 것이며 2호의 단서는 추가한 것으로서 재정결함액 및 특수교육진흥비 보조 중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에 대하여는 사업종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주요골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의 중간을 보시면은 제8조의 3항은 신설조항으로 "교육감은 제1항 제2호의 사업종료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사업의 실적이 보조목적과 조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한 후 보조의 금액을 확정하여, 보조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한것은 교직원의 인건비 집행결과를 보고받으면 집행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현장 점검 확인 후, 이상유무를 판단하여 최종보조금액을 확정하려는 절차로

지금까지 실시해온 절차를 명시한 것입니다.

제9조 시행세칙도 신설조항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의 범위안에서 보조에 필요한 지침 등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던 사항등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14쪽의 관계법령발췌사항과 15쪽의 예산편성지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운영비 집행을 충실히 하여 부실한 예산집행의 방지와 잔액은 다음년도로 이월 학교장 책임하에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고, 둘째 법인에서 지원하는 학교 운영비를 확대 진출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것이며 셋째, 학교는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정산보고에 따른 시간과 인력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하에 1년여 동안 추진하여 온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시 45분)

● 의장 김영세

● 의장 김영세

예,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김응복, 김사수 두분 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사전에 합의한 바 대로 이상일, 이재희, 김응복, 이근수 장충호 위원님 등 다섯분을 위원으로 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가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김응복, 김사수 두분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예, 이의없으십니까?

두분위원께서는 수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제의한 바 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본회의 산회후에 회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 산회)

5.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 출석위원 : 10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이상일, 위원 이재희, 김응복,
김광수,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17명

교육감 정인영, 부교육감 박동기,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초등장학과장 김학목, 중등장학과장 정철진, 중등교직과
장 임순재, 과학기술과장 정기우, 사회교육체육과장 이
광용,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정
현동, 시설과장 박성근.

○ 의사일정(안) : 별첨1

○ '94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별첨2

○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3

본 회의 회의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

1994년 1월 14일 (금요일) 10시 30분

의사일정 (제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교동국민학교 이전계획안
3. '95학년도 국·중학교 설립계획안변경안
4. 교육위원(권혁풍) 징계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 경과보고
2.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교동국민학교 이전계획안
4. '95학년도 국·중학교 설립계획안변경안
5. 교육위원(권혁풍) 징계요구의 건

(10시 30분 개의)

● 의장 김영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p>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p>	<p>립학교보조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p>
<p>1. 경과보고 (10시 30분)</p> <p>● 의사과장 강인형</p> <p>먼저, 의장님으로부터 징계요구의 건이 제안되어 각 위원님들에게 징계요구 청구요지서를 배부하고 금일 의사일정에 포함하였습니다.</p> <p>그리고 조례심사소위원회로부터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심사보고서와 함께 부의되었습니다.</p> <p>따라서 금일은 김응복 조례심사소위원장로부터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으신 후 제32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 들으셨던 교동국민학교 이전계획안 등 4건의 의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p> <p>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p>	<p>먼저 김응복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김응복 조례심사소위원장 발언대로 나옴)</p> <p>●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응복</p> <p>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응복입니다.</p> <p>우리 소위원회 5인 위원이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p> <p>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1월 5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소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p> <p>이에 따라 어제 오후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안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p>
<p>2.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10시 32분)</p> <p>● 의장 김영세</p> <p>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사</p>	<p>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p>

지금까지는 보조금의 집행액 전액에 대한 사업실적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던 사항을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부분의 집행에 대한 보고를 생략토록 개선하고 사립학교보조에 대한 조례 중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함으로써 사학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예산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위원 모두의 의견을 모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바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별첨1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 의장 김영세

조례심사소위원장님 또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지죠.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질의있으십니까?

(김광수위원 "예"하고 대답)

예, 김광수위원 질의하세요.

● 김광수 위원

교육위원 김광수입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다루면서 먼저번에 공인조례안이 도의회에 가서 여러가지 말이 있었던 그러한 전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심사할 적에 보다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4페이지를 보면은 4페이지의 4를 보면은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이라고 돼있습니다.

이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이것 좀

말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7조의 5항에 보조의 결과가 저조하여 계속 보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보조의 목적을 달성할 만한 희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안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어떠한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들 요즈음 볼 것 같으면은 벽지 시골 학교에 학생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국민학교같은 경우에는 통폐합을 하고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환경이 별로 좋지 않다든가 여건이 별로 좋지 않은 학교에 계속 보조를 줌으로써 이 공연히 1,2년 연장을 해서 학생들에게 좋지않은 그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경우는 없는가.

이렇게 저조하고 좋지않은 학교는 오히려 과감하게 교육감이 용단을 내려서 보조를 중단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 9페이지를 보면은 그 3항에 기준 재정수입액 및 기준 재정수입액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 관할청이 국립학교를 기준으로해서 이렇게 산정을 한다고 했는데 그 맨 뒤에 장에 보니까 '94년도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거기에 맨 밑에 과목별 편성기준이라고 이렇게 나와있는 것 같아요.

그 기준에 의해서 공립학교수준에 의해서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는가 본데 인건비같은데 어떻게 교사들 인건비가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 지금 현재 차등이 있는지 똑같이 하기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이 어디다 어떻게 두었는가 그 다음에 이건 글자가 혹시 한자가 빠지지 않았는가 싶어서 하는 건데 그 밑에 보조액 산출이라고 한데 에 보면은 그 가운데 항에 기준재정 수요액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맨 꼬트머리에 "공립학"를 기준으로 했는데 "공립학교"가 아닌가, '교'자가 하나 빠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 대충 이렇게 질

문을 드렸습니다.

● 의장 김영세

또 다른 위원 질문있으십니까?

(권혁풍위원 거수로 발언신청)

예, 권혁풍위원 질의하세요.

● 권혁풍 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안의 취지가 여러가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도 재단으로부터의 전입금 유인책을 강구하려는 그런 그 취지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그런 것인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영세

또 다른 위원 질문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질문에 심사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께서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가 조례안 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주무국장께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관리국장 "예."하고 대답)

예.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먼저 김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페이지 제4조 그 4호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이 뭐냐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사립학교에 대해서 시설사업에 대한 보조를 할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청주 상고에 교실개축을 위한 목적교부금이 내려온 작년에 예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7조 제2항 5호 "보조의 결과가 저조하여 계속 보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보조의 목적을 달성할 만한 희망이 없다고 인정할 때는 그 보조금의 일부나 전부를 반환케 할 수 있다"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일례를 들어서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교부금을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시설교부금 이런 걸 줄 때에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까지

완성을 하거라."하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데 그 시기를 언제부터 착공을 하라고 하는데도 그 보조를 받은 기관에서 착수를 하지 않고 지연을 한다든지 그 목적 이외에 다른 것으로 그 사용할 전망이 보인다면지 할 때에는 이 내용을 적용해가지고 교부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5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구대조표의 9페이지에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이라고 함은 관할청이 공립학교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조대상학교의 당해년도 재정수요액 및 재정수입을 말한다." 해가지고 그 공립과 사립학교간의 교원의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공립이나 사립이나 교원에 대해서 그 사람의 경력에 따른 인건비는 공립이나 사립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혁풍위원님께서 재단으로부터의 전입금 유인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종전까지는 법인에서 전입

금이 법정전입금을 전부 확보를 해가지고 그 경영하는 학교에 전출을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에 수익이 옛날의 재산이 대개 토지가 되기 때문에 법정전입금을 법으로는 되있습니다마는 그 운영하는 학교에 전출을 시키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사립학교에 보조금을 보조해줄 때에는 100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법정전입금이 넘어오는 10원을 전입금을 전출을 시켜줬다고 하면 그 받은 10원을 뺀 나머지 90원을 저희들이 재정결함액으로 보조를 해줬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100원을 갖고 저희들이 전부 연말에 가면 정산을 해가지고 나머지 사용잔액을 반납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인건비만은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학교운영비는 남는 경우에 이거를 저희들이 반납을 받지 않고 그 학교에서 그 이듬해 익년도로 이월을 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러한 이번에 그 법을 조례를 개정하는 관계로 종전에 10원을 주면 10만큼

손해다 그런 인식은 사라지게 되는
결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유
인책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장 김영세

이해 안가셨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보안을 해드리죠.

그건 뭐 내가 사립학교에 종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내용을 실제로...

오늘날 사립학교 실례가 어떻게 돼
있고 하니 설혹 재단에 수익금이
좀 있어서 그것을 실제 학교에서 전
출해주고 싶어도 진출해주면 진출한
것 만치가 국고보조에서 삭감이 돼요

삭감이 되기 때문에 선의의 투자를
하고 싶어도 실제로 만 학교 형편이
나 국고보조 받을 것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안해줍니다.

그러나 정산을 받지 않는다면 재단
에서도 의혹을 가지고서 다만 얼마라
도 있으면 얼마라도 학교에다 진출을
해주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고보조에 실제상에 손해
가 오니까 안해주는 경향이 있는 거

요.

그렇게 되서는 안되겠지만 실제로
그렇다 이런 얘깁니다. 현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유인책인 겁
니다.

● 김광수 위원

다음해에 또 얘기가 되겠는데요.

● 의장 김영세

다음에 이월이 되더라도요, 이월이
되더라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인제
어떤거 어떤거 실무면에 어떤 경우가
나타나는가 하니 예를 들면 건축비를
여기서 영달해줬다 이겁니다.

건축비를 영달을 해주면은 건축비
에 이 공립학교에서 주는 그 예산만
치가 시설비가 모자른, 실제 건축을
하면 모자른 경우도 있어요.

이때 재단에서 그 모자란 것을 대
줘야 옳은데 이 대주러 온 것도 대주
다 보면은 그만치가 정산을 해가지고
나중에 국고보조에서 삭감이 돼요.

그러면은 이 인건비에까지 영향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주면은 그
안에서 정산하고 남는것은 그 이듬해

이월이 돼야 하기 때문에 마구 함부로 쓸 순 없는 겁니다.

목적외 전용은 절대 안되는 거고, 또 이러한 사례는 선진국에서도 일본의 경우도 전수 사립학교가 담세자의 똑같은 담세자의 자녀란 취지에서 바로 그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 담세자의 자녀가 사립학교에 가 있을 적에 공립에 준하는 공립과 똑같은 액수는 안 주더라도, 준하는 몇%의 보상금을 전수주고 있습니다.

이게 선진국의 예가 그래요.

왜냐, 사립에 가있는 자녀들도 똑같은 담세자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을 하여 줄 국가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형평의 원리에 의해서 이것이 바로 인건비만 정산을, 사실 안전비도 보상금의 성격을 가지면 정산 안받는 겁니다.

그러나 인건비를 정산안받을 때에는 일선에서 오용될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을 덜 쓴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정산

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 권혁풍 위원

그러면 법정전입금이라는 제도가 지금도 그런 법이 살아있습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아, 있죠.

지금 저 법인에서 그 운영하는 학교에 일정한 금액을 전입을 그러니까 재단에선 전출, 학교에선 전입을 받아야 하는 그 제도가 법적으로 있는데 지금 그것을 제대로 지키는 법인이 아마 전국에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 의장 김영세

그 법정전입금이 법정화 돼있는 기준은 있지만서도, 실제로 법인의 수익금이 없을 적에는 주지 않아도 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수익금이 있는 경우에만 주게 돼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법인의 수익금이 없는 것을 갖다 자꾸 법정금액을 전출한다면 사학재단 근본적으로 파산이 오게 돼요. 파산이 오기 때문에 기본 재산을

줄일 순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익이 없으면 못 주는 거다 이런 애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열악한 사학재단이 됐느냐, 이것은 바로 어디에서 오느냐 하니 과거에 우리가 그 광복후 토지개혁을 했는데 토지개혁이전에 인가된 사학들은 전부 토지가 기본재산이었던 겁니다.

이 토지가 정부의 토지개혁정책에 의해서 학교재산의 이 토지는 유예를 해줬어야 옳는데 유예를 안해주고 이것도 전수 토지개혁 대상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이 과거에 토지를 기본으로 한 재단은 전수가 이게 사라져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한때 정부가 학교를 설립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학교만 세우면 인가해 주겠다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우리 정부가 그렇게 예산이 취약할 적에는.

그런 때 설립된 사학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면에서는 정부

도 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개선이 돼야 민자유치도 돼고 앞으로는 민간인이 오늘날 사학을 설립하지 않으려는 의욕이 어디서 오느냐, 의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라 의욕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담세자의 원칙, 담세자에게 균형있는 형평성있는 예산의 배분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이런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할 겁니다.

● 권혁풍 위원

그러니까 법에는 융통성있게 돼있군요.

● 의장 김영세

예, 그렇습니다.

● 김광수 위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립학교에 보조를 해주어서 그 시설을 했을 적에 그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 사립학교로 소속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교육감이 좌석에서 "법인재산"

이라고 말씀)

● 관리국장 신재철

법인재산.....

예, 그건 저희가 국고로다가 보조를 해줬다해도 그 나중에 그 시설 자체는 법인재산으로 등록이 되지, 저희 그 교육재산은 아닙니다.

● 김광수 위원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 지방학교에 그 사립학교가 운영난이 왔다가 참 어려운 학교 이런 데에 보조를 더 해주면 그것만큼 이 학교가 겨우겨우 집행을 해나가게 된다 이겁니다.

오히려 이런 학교를 과감하게 보조를 끊는다면은 이 국민학교에 통폐합하는 것 마냥 이러한 그 현상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당국의 그 견해는 어떠신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지금 그 말씀하신 저희 운영비는 절대 저희들이 보조를 중간에서 뭐 저 중단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지금 이 중단하게 되는 경우 이런거는 운영비 이외에 그 보조하는 목적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로 해당이 되는 애기지, 운영비만은 공립학교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저희들이 배부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옛날보다는 많이 사라지고 지금은 학교운영이 오히려 국고의존도에 거의 기대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운영의 어려운 점은 별로 없습니다.

● 김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인건비하고 학교운영의 지금 말씀이고, 시설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설같은 거.....

그 지방학교의 그 학교학생이 감소되고 있는데 그런 데도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에요.

시설 노후가 됐으면은 그걸 고치, 교실을 고친다든가 뭐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어요?

● 관리국장 신재철

원칙적으로는 저희들이 교육부로부

터의 지침도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부
족분에 대해서 원칙으로 하고 있지,
교육용 기본재산은 그 유지경영하는
법인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제 근데 그 지금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은 옛날에 그 설립한
사립학교가 거의 대부분 교육용 기본
재산은 뭐 만들어 놔습니다마는 수익
용 기본재산이 토지 아니면 임야로 거
의 옛날에 등록이 돼있거든요.

그게 지금와서는 수익이 거의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지금 어
려운 그 처지에 지금 당하고 있는데
사실은 교육용 기본재산은 법인에서
해주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정 저희들이 교육적으로 어려
울 때에는 저희들이 사립학교에도 시
설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우
가 있는데 이것도 잘 아시다시피 환
특사업비가 끊어짐으로 거의 지금 불
가능한 실정입니다.

● 의장 김영세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있으면 말씀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문없으시죠? 예.

들어가지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지금 질의가 있으셨고 이랬기 때문
에 토론을 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토
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있으신 분 말씀하시기 바
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찬성토론 안받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뭐 별다른
이의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
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증개정조
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교동국민학교 이전계획안

4. '95학년도 국·중학교설립계획변경계획안

(10시 51분)

● 의장 김영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동국민학교이전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95학년도 국중학교설립계획변경안을 상호 연관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교동국민학교 이전안하고.....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반대토론도 없고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은 별도로 의결하겠습니다.

교동국민학교 이전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교동국민학교이전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학년도 국·중학교설립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있으십니까

일괄상정했던 것을 구분해서 의결하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이의없으시죠?

예, 이의가 없으므로 '95학년도 국중학교 설립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계요구건에 대한 회의를 비공개로 하고자 하오니 회의와 관계없는 분들은 모두 퇴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행청 직원 등 회의 비관련자 회의장에서 모두 퇴장)

먼저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비공개회의개시)

(식 제)

(11시 20분 비공개회의종료)

● 의장 김영세

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공개회의해도 들어올 사람없죠 뭐.
그러면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또 말씀있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제33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하겠

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폐회)
(. 부분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 제35조 제4항에 의거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 출석위원 : 10명

의장 김영세, 부의장 이상일, 위원 이재희, 김응복, 김광수, 이근수, 김사수, 박병해, 권혁풍, 장충호.

○ 출석공무원 : 14명

부교육감 박동기, 초등교육국장 김태길, 중등교육국장 박춘용,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정금옥, 기획감사담당관 신태희, 행정관리담당관 이기수, 초등장학과장 김학목, 과학기술과장 정기우, 사회교육체육과장 이광용,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정현동, 시설과장 박성근.

○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3

○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별첨1 참조

議 事 日 程(案)

第 33 回 忠 清 北 道 教 育 委 員 會 (臨 時 會)

1994. 1. 13 - 1. 14 (2일간)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94. 1. 13 (목) 11 : 00 14 : 00	※ 교육위원협의회 ※ 개회식 【 제1차 본회의 개의 】 1. 제3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9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3. 충청북도 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제1차 본회의 산회 】 ※ 소위원회 활동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 충청북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세부 제안설명, 심사·의결 및 심사보고서 작성	회 기 1. 13. - 1. 14. (2일간)
1. 14. (금) 10 : 30	【 제2차 본회의 개의 】 1. 충청북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2. 고등국민학교 이전계획안 의결 3. '95학년도 국·중학교 설립계획변경안 의결 4. 교육위원(권혁풍) 징계 요구의 건 5. 기타안건처리 【 제2차 본회의 산회 】 ※ 폐 회 ※ 소위원회 활동 ○ 제1차 징계·자격심사소위원회 -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 - 교육위원(권혁풍)징계 요구의 건 심사	

(별첨 2)

1994年度

主要業務計劃

忠清北道教育廳

目 次

I. 一般現況	41
II. 忠北教育의 基本方向	45
III. '94. 主要業務計劃	46

I. 一般現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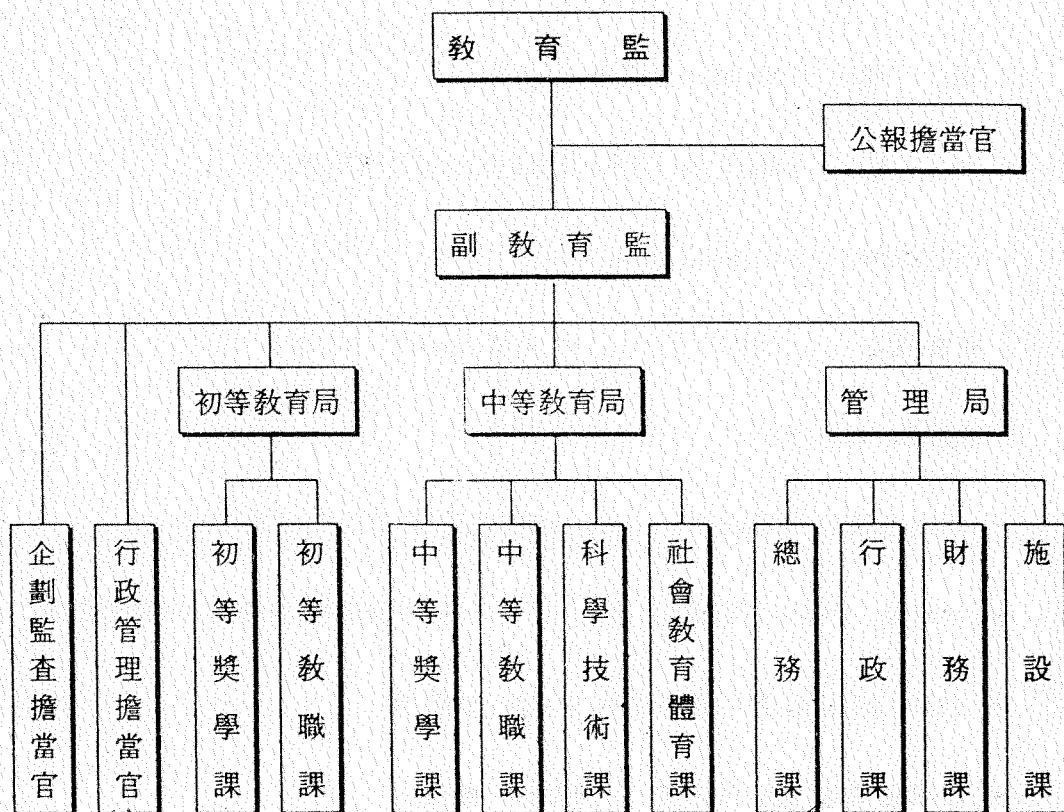
1. 道 勢

- 面 積 : 7,436 km^2 (全國의 7.5%)
- 人 口 : 1,404千名 (全國의 3.2%) / 家口數 391千
- 行政區域 : 3市 10郡 162邑面洞
- 就業構造 : 1次產業 33.7%, 2次產業 18.9%, 3次產業 47.4%
- 地域의 特殊性
 - 小白山脈과 車嶺山脈 사이의 中部 內陸에 位置 地 79%
 - 大清湖, 忠州湖 / 俗離山, 月岳山, 小白山 / 豊富な 水資源과 觀光資源
 - 3個의 高速國道가 通過하는 交通의 要衝地
 - 首都圈 隣接地域으로 農·工團地의 擴張
 - 忠·孝·禮를 崇尚 하는 教育·文化의 高장
 - 世界最古의 印刷文化 發祥地 : 清州 興德寺址
 - 離農現象에 따른 農村學生 減少

2. 行政組織

○ 機 構

- 本 廳：3局 3擔當官 10課
- 直屬機關：7
- 地域教育廳：11



○ 公務員定員

'94. 1. 1 現在

計	教 員	教育專門職	一 般 職	技 能 職
13,803	10,669	214	986	1,934

3. 學校現況

'94. 1. 1 現在

區 分	學 校 數	學 級 數	學 生 數	教 員 數
計	894	8,145	306,308 全國對比 3.3%	12,927
幼 稚 園	398	707	17,297	709
國 民 學 校	302	4,058	136,938	5,161
中 學 校	110	1,718	77,917	3,465
高 等 學 校	71	1,434	67,220	3,312
放送通信高等學校	3	21	1,011	
產業體附設學校	2	48	2,462	60
特 別 學 級	(4)	46	2,361	48
特 殊 學 校	8	113	1,102	172

4. 學校法人現況

'94. 1. 1 現在

法 人 數	學 校 數					教 員 數	學 生 數
	計	國	中	高	特 殊		
24	43	1	20	20	2	1,543	38,186

5. 社會教育機關現況

'94. 1. 1 現在

計	公共圖書館	學生會館	學 院	課外教習所
2,447	12	1	1,496	938

6. 財政現況

○ 總規模：471,496,793千원

(單位：千원)

區 分		豫 算 額	構 成 比(%)	備 考
歲 入	依 存 收 入	400,228,248	84.9	
	• 交 付 金	318,222,000	67.5	
	• 地 方 教 育 讓 與 金	81,566,314	17.3	
	• 轉 入 金	49,653	0.02	
	• 支 援 金	390,281	0.08	
	自 體 收 入	71,268,545	15.1	
	• 入 學 金 及 授 業 料	28,740,930	6.1	
	• 移 越 金	30,271,312	6.4	
• 其 他 收 入	12,256,303	2.6		
合 計		471,496,793	100	
歲 出	人 件 費	333,283,177	70.7	
	行 政 費	3,371,849	0.7	
	教 育 事 業 費	6,799,469	1.4	
	學 校 運 營 費	27,312,718	5.8	
	私 學 支 援 費	28,595,522	6.1	
	施 設 費	66,428,797	14.1	
	豫 備 費 其 他	5,705,261	1.2	
	合 計		471,496,793	100

II. 忠北教育의 基本方向

教育의 目標

21 世紀를 主導할

自主·創意·道德的인 健康한 韓國人 育成



教育 施 策

1. 學校運營의 專門性·自律性 保障으로 教育發展
2. 先進 民主市民으로서의 資質 涵養을 위한 全人教育
3. 21世紀 國際化 社會를 主導할 人材養成을 위한 秀越性 教育
4. 學習活動에 도움을 주는 多様な 教育與件 造成

III. '94. 主要業務計劃

1. 學校運營의 專門性·自律性 保障으로 教育發展

가. 學校長의 透徹한 教育觀에 의한 指導性 發揮와 公職者의 意識改革

- 學校運營에 對한 意識轉換
 - － 透徹한 教育觀 確立：各級 學校長 및 校監 研鑽會 開催, 2回 900名
 - － 民主的 指導性 發揮：敎職員의 創意·發展의 意見 收斂
- ‘信賴받는 教育’의 해 定着：敎職員의 共同體 意識과 使命感 鼓吹
 - － 意識轉換 懇談會 開催：2回, 地域教育廳 單位 實施
 - － 發展的인 思考와 研究하는 姿勢：參與와 自己責任意識 提高／信賴性 回復
- 誠實하게 努力하는 敎職員이 優待 받는 風土造成
 - － 尊敬받는 師道의 實踐：정성어린 授業／師弟同行／率先垂範
 - － 誠實한 敎員 優待：優秀敎師의 發掘表彰／國外研修 機會 擴大

나. 學校長 中心의 自律行政, 人和 中心의 民主行政, 現場 優先의 支援行政

- 自律行政：創意性 發揮／스스로 努力하는 姿勢 確立
- 民主行政：和合과 協力雰圍氣 造成／意思決定의 民主化
- 支援行政：敎壇中心의 支援體制 確立／敎授·學習 支援

다. 서로 尊敬·協力하는 人間關係 속에서 企劃·財政·人事管理

- 企 劃：共同思考를 통한 學校運營計劃 樹立 및 推進
- 財 政：健全한 教育財政 運營／合理的인 豫算編成／執行內容 公開
 - － 效率的 豫算執行：浪費的 要素 果敢히 除去／都給經費制 擴大
- 人 事：人事諮問協議會를 통한 公正한 人事管理

2. 先進 民主市民으로서의 資質 涵養을 위한 全人教育

가. 人間性 回復과 健全한 價値觀을 심어주는 道德性 教育

- 節制教育 實踐을 통한 道德教育의 強化
 - － 禮節教育：基本生活習慣 指導／民主市民資質 涵養
 - － 經濟教育：勤儉·貯蓄／先進 經濟國의 跳躍 기틀 造成
 - － 秩序教育：遵法精神 鼓吹／學校·家庭·社會에서 自律的 實踐力 育成
- 健全한 學生文化 定着을 통한 바른價値觀 形成：友情·協同·自矜心 鼓吹
 - － 참된 삶에 대한 自立意志 培養／修鍊活動의 活性化／社會適應力 提高
- 民族自尊意識 高揚：나라사랑 教育의 徹底／傳統文化 繼承 發展
 - － 선비精神·中原精神文化의 繼承 發展／忠淸文化 巡迴踏查, 800名
- 家庭의 教育的 機能回復：올바른 家庭教育／家庭의 날 運營 - 每週 土曜日
- 學生理解中心의 生活指導：全教師의 教導教師化／相談自願 奉仕制 運營

나. 學校教育의 正常化와 學生들의 多樣한 教育活動 展開

- 創意的인 教育課程 運營：地域, 學校實情 考慮／特別活動의 活性化
- 教授·學習 方法의 改善：討議學習, 探究學習, 勞作學習의 一般化
 - － 自律的 學習能力 培養／學習의 個別化／즐거운教室 運營
- 1校 1技 및 1人 1運動의 積極 推進：全員體育의 活性化
- 幼兒教育 및 特殊教育의 內實：資料擴充／特殊學級 增設
- 評價方法의 多樣化：主觀式 評價의 擴大／實技評價의 適正
- 讀書文化의 定着：讀書與件의 造成／讀書習慣의 形成

다. 自由民主主義 體制의 優越性을 理解시키고 統一意志를 심어주는 教育

- 自由民主主義 優越性 教育：人間의 尊嚴性, 自由, 平等, 他人意思尊重 教育
- 統一後의 삶에 對備한 教育：北韓實相理解／民族和合과 同質性回復 教育

3. 21世紀 國際化 社會를 主導할 人材養成을 위한 秀越性 教育

가. 學生들의 適性和 素質을 바로알고 未來社會에 適應할 수 있는 能力 培養

- 個人의 潛在能力 啓發：早期發見／特殊才能兒 國·中·高 連繫指導
 - － 學生個別能力에 따른 프로그램 適用／英才教室·科學探究班 運營
- 特殊目的 高等學校 運營의 內實：科學高, 外國語高, 體育高, 藝術高
- 高度產業社會에 副應하는 科學·技術人 養成
 - － 實驗·實習의 徹底／實驗實習費 增額 支援, 11億 6百萬원
 - － 學校科學館 建立：2年次 5個所, 27億원 投資(總11個 地域 58億원)
- 컴퓨터 教育의 強化：컴퓨터 擴充 3,093臺／소프트웨어 42,000篇 普及
- 國際理解教育의 擴大：外國語 教育의 活性化／UR對應教育 徹底
 - － 우리農水產物 利用：學校·寄宿舍 給食／내故鄉 農產物 팔아주기 運動

나. 모든 學校가 特色있게 發展되도록 育成하고 學生 進路選擇의 幅 擴大

- 地域 特性을 考慮한 特色있는 學校 育成：傳統있는 學校運營
- 進路教育의 充實：進路指導 資料 開發／進路時間, 進路의 날 運營
 - － 實業系 高校 收容能力 擴充／實業系 高校 運營 充實
- 社會教育機關의 機能 強化：公共圖書館／學生會館／學院·課外教習所

다. 敎員으로서의 矜持와 自負心을 갖도록 하고 研修機會擴大로 學生指導力 向上

- 獎學活動의 內實化로 學生 指導力 向上
 - － 敎員의 研究秀圍氣 造成：研究·示範·實驗學校 運營
 - － 授業獎學：自己獎學, 同僚獎學의 充實
- 資質向上을 위한 研修機會 擴大：研修方法의 改善
 - － 各種 研修 5,904名／各種 研鑽會 7回, 592名
 - － 敎員碩士課程 特別研修：韓國敎員大學校 大學院 派遣, 87名

4. 學習活動에 도움을 주는 多樣的 教育與件 造成

가. 教育施設事業에 關聯敎職員의 意見을 收斂하여 快適하고 便利한 教育環境 마련

- 教育施設事業시 充分한 意見 收斂으로 效率性 極大化
- 教育活動을 생각하는 教育環境 造成
 - － 敎室 增·改築 130室／特別敎室 增築 9室／老朽敎室 重修 1,732室
 - － 照度改善 1,471室／地下水 開發 12孔
 - － 化粧室 改良·擴充(學生用 16棟, 敎職員用 30棟)
- 環境保全教育 強化
 - － 自然을 살리는 教育／環境淨化의 날 運營 - 每月 첫째주 土曜日
- 合理的인 學校保健 管理：學校給食의 擴大 132校／良質의 給水

나. 敎授·學習에 不便함이 없도록 質 높은 學習機資材 確保

- 效率性 높은 學習機資材 購入費 支援：國·中·高校 9億 6千萬원
- 科學·技術 實驗室 및 敎具의 擴充
 - － 遊休敎室 轉換／質 높은 敎具 確保
- 教育情報센터 示範敎育廳 運營：鎮川敎育廳

다. 教育與件 改善을 위한 學校 統·廢合, 再配置, 新設의 持續的 推進

- 收容能力 均衡 維持：學校新設／統·廢合
 - － 學校新設：國 2, 中 1, 高 1 ('95. 3. 1 開校)
 - － 小規模學校의 統·廢合：分敎場改編 9, 本校廢止 1, 分敎場廢止 10
- 私立學校 教育與件의 改善
 - － 財政缺陷額 支援, 39校 231億 7千萬원／名譽退職制 適用
- 敎員業務輕減을 위한 行政裝備 支援：國·中·高校 10億 3千萬원
- 教育行政業務 電算化 프로그램 普及：中學校 成績處理／旅費管理

(별 첨 3)

의안 번호	제 77-1 호
의결년월일	1994. 1. . (제 회)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4. 1. 5.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 번	안 호	377-1
--------	--------	-------

제출년월일 : 1994. 1. 5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개정사유

-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재정결함액 및 특수교육진흥비의 사업종료(실적)보고 방법을 개선하여 사학의 자율성신장, 재정에관한 책임성 확보,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 하고, 이와 관련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재정결함액의 사업종료(실적)보고 방법 개선 (안 제8조 제1항)
 - 현 행
기준재정수입액(세입) 및 기준재정수요액(세출)을 산출하여 부족분을 전액 지원하고 회계년도말 집행액 전액에 대한 사업종료(실적)보고를 받음
 - 개 선
기준재정수입액 및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하여 부족분을 전액 지원하고 회계년도말 사업종료(실적)보고시 학교의 재정수요액중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부분의 집행에 대한 보고를 생략함.

□ 제안근거

-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및 동법시행령 제17조(국가의지원대상)
- '94년도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조 례 안 : 덧 붙 임

□ 기타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예산편성 기본지침 발췌 : 덧붙임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조(중전의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정결함액" 이라 함은 보조대상 학교의 관할청이 산정한 보조대상년도의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2. "특수교육진흥비" 라 함은 특수교육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특수학교에 보조하는 제 경비를 말한다.
3. "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 " 이라 함은 관할청이 공립학교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조대상학교의 당해년도 재정수요 및 재정수입을 말한다.

제3조(보조대상) 사립학교 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행하는 보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이하 "보조대상기관"이라 한다)에 행한다.

1. 사립의 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2.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가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립학교

제3조를 제5조로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조(중전의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를 할 수 있다.

1. 재정결함액 보조사업
2. 특수교육진흥을 위한 사업
3. 실업계학교의 실험실습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

4.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5. 기타 교육감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의 결정) ①교육감은 매년도 보조대상기관에 대하여 보조예정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교육감은 전항에 의하여 보조대상기관으로부터 제출된 보조신청서에 대하여 그 보조여부를 총액으로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당해 보조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전항에 의하여 보조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내지 제6조를 각각 제6조 내지 제8조로 하고, 제6조 내지 제8조 (종전의 제4조 내지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 보조대상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교부한다.

제7조(보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보조대상기관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결정 통지한 보조금은 보조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교육감은 보조대상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보조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
3. 보조를 위한 관할청의 예산변경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
4. 사립학교법 또는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5. 보조의 결과가 저조하여 계속 보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보조의 목적을 달성할 만한 희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
6. 보조사업의 보고에서 허위인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8조(보고와 감독) ①보조를 받은 기관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다만, 재정결함액 및 특수교육진흥비 보조에 대하여는 사업개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2. 보조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다만, 재정결함액 및 특수교육진흥비 보조중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에 대하여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3. 기타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보고서

②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대상기관에 대하여 그 보조사업의 진도와 경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교육감은 제1항 제2호의 사용종료(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사업의 실적이 보조목적과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후 보조의 금액을 확정하여 보조대상기관에 통지 하여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사 항

- 0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 0 관계법령발췌 : 덧붙임
- 0 예산편성 기본지침 발췌 : 덧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생략 (신 설)</p> <hr/> <p>제2조(보조대상) 사립학교 교육의 조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행한다.</p> <p>1. 사립의 중학교·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p> <p>2. (삭 제)</p> <p>3. 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p>	<p>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p> <p>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재정결함액" 이라 함은 보조대상 학교의 관할청이 산정한 보조대상연도의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p> <p>2. "특수교육진흥비" 라 함은 특수교육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특수학교에 보조하는 제 경비를 말한다.</p> <p>3.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 이라 함은 관할청이 공립학교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조대상학교의 당해년도 재정수요 및 재정수입을 말한다.</p> <p>제3조(중전의 제2조)</p> <p>제3조(보조대상) - - - - - - - 교육감이 행하는 - - - - - - - - -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이하"보조대상기관" 이라 한다)에 - - - - -.</p> <p>1. 사립의 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p> <p>2.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가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립학교</p>

현행	개정안
<p>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p> <p>4. 기타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가</p> <p>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법인 또는</p> <p>사립학교 경영자</p> <p>(신 설)</p> <p>제3조(보조의 결정) ①충청북도교육감은 매년도 보조의 대상이 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 보조예정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p> <p>②교육감은 전항에 의하여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로부터 제출된 보조신청서에 대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통지 하여야 한다.</p>	<p>제4조(보조대상 사업)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정결함액 보조사업 2. 특수교육진흥을 위한 사업 3. 실업계학교의 실험실습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 4.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5. 기타 교육감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제5조(중전의 제3조)</p> <p>제5조(보조의 결정) ①교육감은 - - - - - - - - - - 보조대상기관에 대하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 <p>②- - - - - 보조대상기관으로 부터 - - - - - - - - - - 총액으로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당해 보조대상기관에 - - - - - - - - - -</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4조(보조금의 교부) <u>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집행에 따르는 보조계획에 따라 교부한다.</u></p> <p>제5조(보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 <u>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결정 통지한 보조금은 교부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p> <p>② <u>교육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u> 2. <u>목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u> 3. <u>보조를 위한 감독청의 예산변경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u> 	<p>③ <u>교육감은 전항에 의하여 보조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u></p> <p>제6조(종전의 제4조)</p> <p>제6조(보조금의 교부) <u>보조대상기관에 대한 예산집행계획에</u></p> <p>제7조(종전의 제5조)</p> <p>제7조(보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 <u>보조대상기관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목적</u></p> <p>② <u>보조대상기관이</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보조금을 보조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u> 2. <u>보조</u> 3. <u>관할청의 아니한</u>

현행	개정안
4. 사립학교법 또는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u>감독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u>	4. - - - - - - - - - - <u>관할청의</u> - - - - - - - - - -
5. 보조의 결과가 저조하여 계속 보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보조의 목적을 달성할 <u>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때</u>	5. - - - - - - - - - - - - - - - <u>만한 희망이</u> - - - - - - - - - -
6. 보조사업의 보고에서 허위인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6. - - - - - - - - - -
제8조(보고와 감독) ①보조를 받은 학교	제8조(종전의 제6조)
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와 감독) ①보조를 받은 기관은 - - - - - - - - <u>날부터</u> - - - - - - - - - - - - - - -
1. <u>목적사업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u> 다만, 재정결함액 보조 및 특수교육진흥비 보조는 제외한다.	1. <u>보조사업을 개시한</u> - - - - - - - - - - 다만, 재정결함액 및 특수교육진흥비 보조에 대하여는 사업개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2. (삭제)	
3. <u>목적 사업이 종료 하였을 때에는 사업종료(실적) 보고서</u>	2. <u>보조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 보고서</u> 다만, 재정결함액 및 특수교육진흥비 보조중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에 대하여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현행	개정안
<p>4. 기타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보고서</p> <p>②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 그 목적 사업의 진도와 경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p> <p>(신 설)</p> <p>(신 설)</p>	<p>3. 기타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보고서</p> <p>②- - - - - 보조대상기관에 대하여 그 보조사업의 - - - - -</p> <p>- - - - -</p> <p>- - - - - 검사하게</p> <p>- - - - -</p> <p>③교육감은 제1항 제2호의 사업종료(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사업의 실적이 보조목적과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보조의 금액을 확정하여 보조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p> <p>제9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관계법령발취

○ 사립학교법

o 제43조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관할청은 제 1 항 또는 제36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1.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받는 일
2.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하는 일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 1 항 또는 제35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성고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후의 지원은 이를 중단할 수 있다.

○ 사립학교법시행령

o 제17조 (국가의 지원대상) ①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국가가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지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행한다.(개정 90. 7. 19)

1. 실업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2. 국가가 필요로하는 특수한 학과 또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학교경영에 재정적 곤란을 받는 학교법인
4. 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5. 기타 특히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법인

②제 1 항의 보조 또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94년도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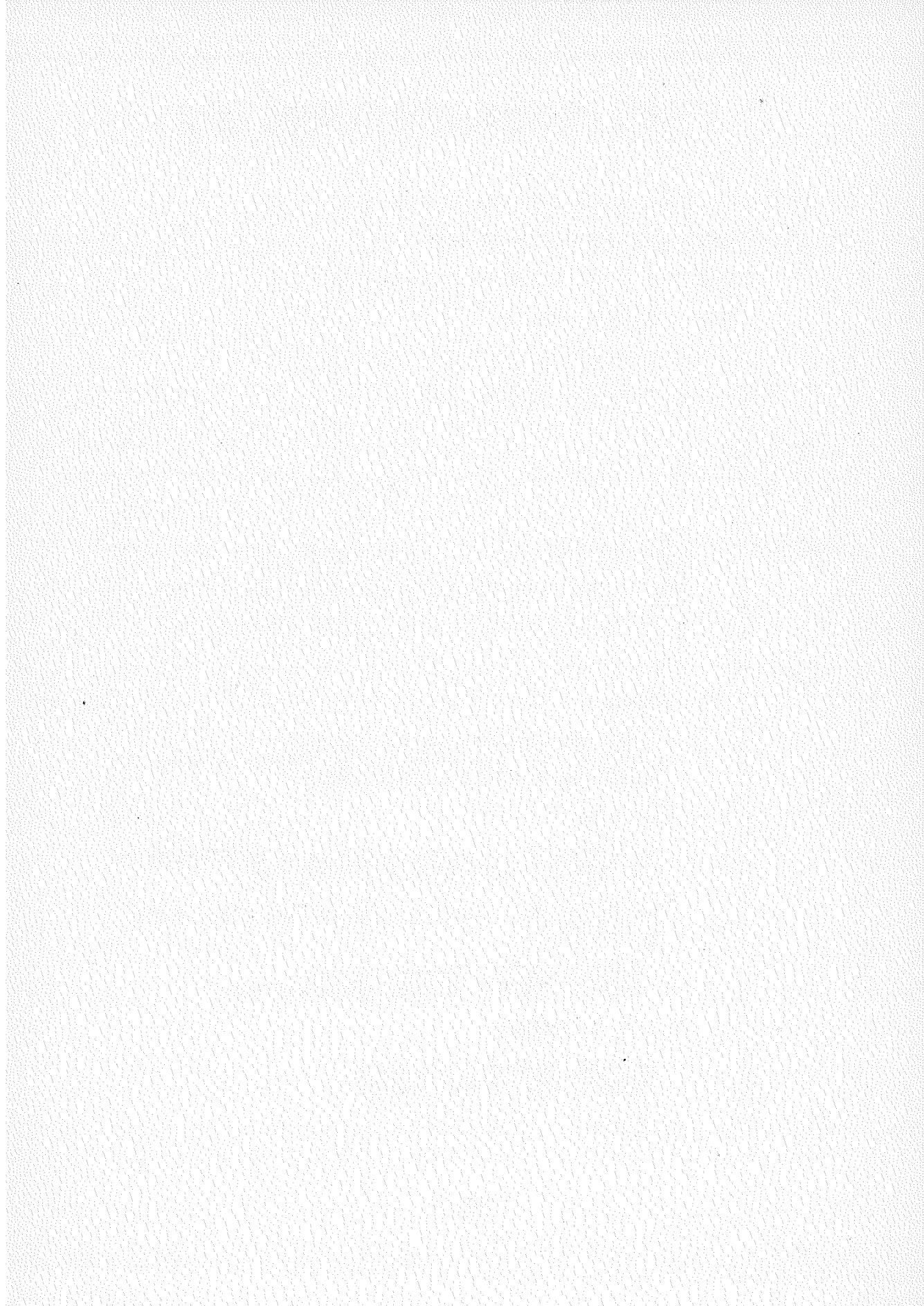
○ 사학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재정지원 방법 개선

o 경상적운영비에 대한 재정지원 방법의 보완

- 기준재정수요를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하여 산정
 - 인건비 : 공립학교 정원기준
 - 운영비 : 공립학교 학생1인당 운영비 기준
- 지원액중 인건비는 정산, 운영비는 미정산

o 과목별 편성기준

구 분	편 성 기 준
사학지원비	<p>□ 사학운영지원비인 사립 중·고등학교재정결함지원은 다음 기준에 의거 산출하여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부족할 경우 그 부족액을 계상하되 반드시 <u>조례등에 지원기준을 마련</u> 하여 지원</p> <p>○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법 제81조제1호에 의한 중·고등학교 · 기타학교는 시·도별 교육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원하되 공납금이 자율화 되어 있는 학교는 제외 <p>○ 보조액 산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재정수입액 : 입학금및수업료징수율 및 법인전입금을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자체기준을 정하여 산출 · 기준재정수요액 : 계열별, 학교급별, 규모별에 상응한 공립학을 기준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는 공립학교 정원기준으로 계상 - 운영비는 공립학교 학생1인당교육비 기준 계상 <p>○ 보조 및 사후정산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와 운영비를 총액 보조하되 · 인건비는 정산, 운영비는 미정산



第 33 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94. 1. 13)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條例審查小委員會

목 차

1. 제3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1차 조례심사소위원회.....3

2. 부 록

가)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17

조례심사소위원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

1994년 1월 13일(목요일) 15시 10분

의사일정(제33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2.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2.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5시 10분 개의)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직무대행 장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선임은 구두호천을 통하여 하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을 받아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바랍니다.

● 위원 이상일

김응복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장중호

이상일위원님으로부터 김응복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후보자가 김응복위원님 한 분만 추천되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면 김응복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겠습니다.

김응복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고 위원 모두 대답)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응복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김응복위원님은 저와 자리를 바꾸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위원장 직무대행의 임무교대)

● 위원장 김응복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책임이 무겁습니다.

진행상 조금 미숙한 점이 있어도 잘 좀 협조해 주셔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선임은 역시 구두호천을 받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후보자를 구두호천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근수

이재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응복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이재희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는데 대한 이의 여부만을 묻겠습니다.

이의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고 위원 모두 대답)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재희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셨음을 선언합니다.

2.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15시 15분)

● 위원장 김응복

이제 심사안전인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조금전에 있었던 제1차 본회의에서 관리국장님의 자세

한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의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집행청관계관에게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간사 이재희

제가 먼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
다.

지금 보조금중에 인건비와 학교운
영비가 있는데, 연말에 정산하면 남
는 돈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상찬

예, 남는 돈이 있어서 모두 반납
받았습니다.

● 간사 이재희

보통 12크라스 정도라고 하면 반납
한 액수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나
 됩니까?

몇 백만원씩 올라가나요?

● 행정과장 이상찬

전년도의 예를 들면 45교에서 반납

된 것이 교당 평균 83만 2천원 정도
됩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돈 백만원 정도.....

● 간사 이재희

뭐 엄청난 돈도 아니네요.

● 관리국장 신재철

예.

● 위원 이근수

사립학교에 한해서만 이런거죠?

● 행정과장 이상찬

예, 그렇죠.

● 관리국장 신재철

저희가 공립학교는 인건비를 소요
액에 의해서 직접주니까 상관이 없는
데, 사립학교는 그때 그때 줄 수가
없어서 일단 보조금을 주고 연말에
정산을 받아서 남는 것이 있으면 반
납을 받아 왔는데, 학교운영비조차
정산을 받아 남는 것을 반납받다보니
까 반납을 하지 않으려고, 어저지로
모두 써버리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학교운영비만은 일단 내주면
남더라도 반납을 받지 않고 이월하여
쓸 수 있도록 하고, 인건비만 정산하

여 반납을 받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감사 이재희

돈을 주면 자동적으로 감사가 따라가야 되는데, 감사는 어떻게 다른데 마냥 3년에 한번씩 합니까?

아니면 매년 한번씩 합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연말정산에 대한 것은 조금 의심이 간다거나 이상한 것은 하는데, 정기감사는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요.

● 위원 이상일

제가 한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사립학교의 운영에 도움을 주자고 개정을 하는 거지요?

● 관리국장 신재철

예.

● 위원 이상일

과거에도 운영비를 최대한 해줄려고 해도 집행할 수 없으니까 안한 거지요?

● 관리국장 신재철

예.

● 위원 이상일

그런 액수를 사립학교에서 왜 다 못썼을까요?

● 관리국장 신재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수준은 공립학교에 필요한 학급당경비 교당경비를 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진거죠, 옛날보다는.

다만 그 법인에서 전입금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 전입금이 학교로 전출금으로 주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에선 그것을 세입을 잡아서 학교에서 필요한 운영, 법인의 경우 100원이라고 하려는 총 그 학교를 운영하는데 필요한게 1,000원이다 그러려는 100원어치는 빼고 우리가 900원을 우리가 보조를 해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에서 전입금을 많이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조금만 내도 나머지는 국가에서 다 결함액을 주니까, 그래 이런 모순이 자꾸 생기고 그러고 보니까 나머지 있는 돈은 다 쓸려고 하고, 그래서 차라리 남는 돈을 그 다음해로 너희들이 쓸 수 있게 해주려는 전입금도 마음대로 주거든요, 이제.

전입금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여기에 사실은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을 1년차에 안되며는 2년차, 3년차에 계획을 했다가 넘겨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편의 봐주고, 결과적으로는 자꾸 그 제도상의 모순을 우리는 해결해 나갈려고 하는, 정부의 방법도 그거고...

● 위원 이상일

이게 이렇게 함으로써 사학유지 재단이 학교에다가 전입금을 좀 더 늘려주는 유인책도 된다?

● 관리국장 신재철

예, 종전에는 우리가 나머지 부족한 거는 다 대주니까, 우리가 전입금이, 저쪽으로 진출금을 줘도 그게 그만큼 손해 아니냐, 이런 생각때문에 안주거든요.

● 위원 이상일

그래 내놓는 재단이 과거 대개다 안내도 다 대주니까 안냈는데, 이게 유인책이 된다 그거죠.

● 관리국장 신재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응복

다음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안 제7조 제2항 제2호내지 제5호 등에 보면 조문중 일부 개정임에도 전부 개정형식을 취한 것은 정부의 행정법령 입안요령의 기본형식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조문의 표현상의 문제인데, 안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단서조항중 동일한 용어가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용어는 축조심사 할 때 같이 해나갈까요?

● 관리국장 신재철

예,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며는요 이게 전국에서 똑같이 개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담당자들을, 각 시·도 교육청의 담당자들을 불러가지고, 이것을 개정하는 데의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근간은 그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교육부의 준칙이 오며는 준칙에 의해서 이것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준칙을 내리기 전에 각 시·도 교육청의 담당자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지금 법을 개정하려고 그

러는데 이제까지 운영하면서 무슨 점이 뛰었느냐?

전부해 가지고 전국 시·도가 똑같이 이 내용으로 지금 고치는 겁니다.

교육부에서 같이 관계관, 시·도교육청의 담당자 합쳐가지고 그 회의를 해가지고 이 조항은 운영하다보니까 이러한 잘 못된게 발견된 겁니다.

각 시·도에서 서로 그 문제점이 있는 것을 체크를 해와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안이 만들어 진 겁니다.

● 위원장 김응복

그러면 이 안은 각 시·도가 보조를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이겠지요?

● 관리국장 신재철

예, 거짐 준칙에 의해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 위원장 김응복

다음 진행을 어떻게 할까요?

이 조문이 충청북도만의 조례안이 아니고, 각 시·도 담당자가 모여가지고 보조를 같이 한 조문인 것 같아요.

축조해서 심의하는게 쉬울 것 같아요.

축조해서 심의할적에 자구문제라든가 기타 여러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9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서 하시는게 제일 빠르실 겁니다.

● 위원장 김응복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이게 조문아닌가요?

● 관리국장 신재철

아닙니다.

9페이지를 보시려는 제일 이해가 빠르게 돼있어요.

비교해서 개정이 되니까요.

● 위원장 김응복

그럼 누가 낭독 좀 해 주시지요.

● 행정과 의무교육계장 이상기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응복

1조부터 하시지요.

● 행정과 의무교육계장 이상기

제1조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2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낭독)

● 위원장 김응복

제2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모두 침묵)

제2조에 대해서 이의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읽어 주세요.

- 행정과 의무교육계장 이상기
안 제3조는 종전의 제2조가 되겠습니다.

(제3조 낭독)

- 위원장 김응복
제3조에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조문으로 넘어가죠.

- 행정과 의무교육계장 이상기
제4조는 신설조항입니다.

(제4조 낭독)

- 위원장 김응복
제4조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5조로 넘어갑니다.

- 행정과 의무교육계장 이상기
종전의 제3조가 제5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5조 낭독)

- 위원장 김응복
제5조에 대하여 질문하실 분하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6조로 넘어 가겠습니다.

- 행정과 의무교육계장 이상기
제6조는 종전의 제4조가 되겠습니다.

(제6조 낭독)

- 위원장 김응복
질문하시죠?
("위원 모두 침묵")
그럼 제7조로 넘어 갑니다.

- 행정과 의무교육계장 이상기
제7조는 종전의 제5조가 되겠습니다.

(제7조 낭독)

- 간사 이재희
이걸 받아보고 제일 이상하게 생각한게 "희망"인데, 희망이란 상당히 좋은 뜻으로 써야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 합당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나는 뭐 "전망"이라든지, 이런 또 예가 될런지 모르지만, 좀 여기에 합당하지 않다

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 관리국장 신재철

예, 조금은 어색하긴 어색해요.

● 간사 이재희

그래서 차라리 전망으로 바꾸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행정과장 이상찬

기성세대하고의 차이죠.

(일동 웃음)

지금 법무담당관 고시 합격자는 "가망"이 "뿔뿔 할만한 희망" 이렇게.

.....

● 관리국장 신재철

그러니까, "목적이 달성될 희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법률용어를 순화를 시켜가지고 풀이를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 어제 신문에 법원판결문, 또는 검찰에서 하는 것이 전부 한글로다 바뀌 쓴다고 하는데, 저희들 하고도 벌써 차이가 나는 내용입니다.

● 위원 이상일

전문가가 이런 말을 써야 된다면..

.....

● 간사 이재희

아니, 전문가는 그 양반만 전문가가 아니잖아 나도 법학사고 교육위원인데.

(일동 웃음)

● 관리국장 신재철

그래, 저희도 어색하긴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어요.

● 행정과장 이상찬

가망을 국어사전에 보며는 이렇게 풀어 써요, "달성할 만한 희망"이라고 써요.

● 위원 김응복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러하다면 그대로 하는게 좋겠습니다.

다음 제8조.....

● 행정과 의무교육계장 이상기

제8조는 종전의 제6조가 되겠습니다.

(제8조 낭독)

● 위원장 김응복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이 "목적사업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사업계획의 보고서" 이렇게 하는데, 이 보조사업

을 개시한 이걸 여기에 넣어서 한번
말해 보세요.

● 행정과 의무교육계장 이상기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
시 보고서" 이것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단서규정을 넣어서 재
정결함액하고, 중·고등학교에 주는
재정 결함액하고, 사립 특수학교에
주는 특수교육진흥비 보조사업에 대
해서는 사업계획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그래 그것은 10페이지에, 페이지를
앞장으로 넘겨보시며는 4조에 보조대
상사업이 그 1호부터 5호까지 있거든
요.

그중에서 그 5호까지 나온중에서
첫째번 1호인 재정결함액, 그 다음에
제2호인 특수교육진흥비 보조에 대해
서마는 사업개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른 것은 제출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상찬

일례를 들자면은 시설을 한다든지,
각종 사업할 때에는 며칠날 계약을
해서 언제 착수를 해서 언제 끝난다
는 사업개시 보고서를 내는 데요.

학교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비나 특
수교육진흥비, 그것은 언제부터 그
것을 쓰겠습니까 하는 것을 생략하는
겁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내용은....

● 위원장 김응복

대체로 이제까지의 예를 보면, 공
립에 비하여 사립학교에 과다하게 지
출이 되고, 지출한데 대한 감독의 강
도가 약하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
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사"를 "검사"로
바꿔서 유하게, 좋게만 해 주는게 현
실에 안맞지 않을까.....

● 행정과장 이상찬

검사라고 하니까 유하게 받아 들이
는 데요.

사실은 "감사" 용어가 그렇습니다.

감사는 정확하게 하니까, 저쪽에서
는 회계검사를 "검사"라고 합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저쪽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정기감사를 하거든요.

그것을 여기서도 감사라고 넣으면 이중으로 되니까 여기서는 검사.....
이거는 회계검사인데.....

● 위원장 김응복

그게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사립학교에 뭐 참 그렇게 재정결함액 전액을 다 대주다시피 하는데, 철저히 감독같은 거 이런 것이 공립학교같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철저히 감사할.....

● 관리국장 신재철

아니, 이게 종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정결함액을 저희들이 보조해주기 전에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감사를 감사담당관실에서 나갔을 때는 돈도 못대어 주면서 자기들이 쓰는 것 갖고 감사하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정결함액을 보조를 해주고 나서부터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지요.

그 전에는 사립학교 감사를 좀 돈

도 안대주면서 감사해야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니까 그쪽에서도 싫어하고 했는데 지금은 돈을 국고에서 보조를 받아 쓰는 걸 우리가 감사하는 거에 대해서 저쪽에서 거부반응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 돈 가지고 감사를 하는 거니까 지금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소 그런 점이 있었지요

● 행정과 의무교육계장 이상기

신설조항에 대하여 제가 실무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해오던 사항을 여기 조례에 명문으로 해 놓으므로써 강화시키는 의미도 있습니다.

● 간사 이재희

그런데 말이지요.

11쪽에 그 3항 맨위에 "교육감은 전항에 의하여 보조결정을 하고 발생한 사정으로 변경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빼버리면 안돼요?

악용될 소지가 있잖아요.

● 관리국장 신재철

아니 그렇게는 안됩니다. 이것 때

문에 전체 회의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모양인데, 이것은 무슨 내용을 말씀드리냐며는 학급이 변동되거나 보조결정을 했는데도 뭐 결원이, 학급보다는 인원이 결원이 되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감액을 시켜야 되거든요.

보조한 것을 우리가 변경을 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사항으로 넣었지, 이게 뭐 특별히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공립학교와 똑같이 산출기초해서 내준 것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가 감액을 못시키거든요.

다만 그러한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결원이 생겨가지고, 장기간 결원이 되어가지고 그걸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런 건 우리가 딱 해줘야 그 다음에 그 사람들도 "아, 이거 안되겠구나" 하는 식으로.....

우리가 좀 이것을 감독차원에서 잡아 넣어진 겁니다.

● 행정과장 이상찬

저 이걸 학교에 운영비 보조라 생각치 마시고, 만약에 시설비를 보조해줬다 가정할 때에 연도말에 시설비를 보조를 해주며는 보조금의 연한이

달게 되는 거란 말요.

그럼 12월 말일까지 이 사업을 완료해라 하는 보조조건을 달았을 때, 12월말까지 완료를 못했을 때에는 우리가 회수해야지요.

그러한 조건과 내용이 변했을 때에는 보조권자가 보조금 관리법에 변경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 위원장 김응복

조건이 변경되었을 때는 아무래도 달라져야 겠지요.

● 행정과장 이상찬

"언제까지 착공해라, 시설사업은 7월까지 착공해라 만약에 7월 이후까지 착공을 안했을 때는 보조 목적을 취소하겠다."

그런데 우기가 닳쳤다, 그래서 착공을 못했다 그러면 8월이라든지 9월이라든지 그 조건을 변경을 시켜줘야지요.

● 간사 이재희

내년도 시설사업비 있으니까, 어떤 학교 교실 10칸을 지어 주겠다 약속을 했다가, 착착 준비를 했다가 거의 시작할 무렵에 가서 형편에 의해서

다섯개밖에 못지어 준다 이렇게 해..

● 관리국장 신재철

아니 보조는 딱 통지를 해주고 나서 우리가 변경을 계획하는 거니까, 다섯을 준다는건 확정되는 거거든요.

● 행정과장 이상찬

여기 5조에 "보조 결정"이라는게 있잖아요.

그거는 교육감이 우리 학교에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조건으로 다가 주겠다 하는 보조통지를 받은 다음에는 법적으로다가 그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사항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 이근수

"감사"라는 말보다는 "검사"라는 것이 금융계통에는 대개 검사쪽으로 많이.....

이 금융관계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이게 집행과정에 대한 회계 검사를 우리가 하는거지 이건 보조목적대로 집행이 됐느냐, 이런 거에 대한 회계에 대한 검사인데 감사라고 하니까 감사는 전반적으로 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나가고, 검사를 해야지만 되는 거죠.

(위원 모두 잠시 침묵)

● 위원 이상일

이제 하실 말씀들을 다하신 모양인데, 제가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문중 표현상에 약간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언어 순화차원에서 가능한한 쉽게 풀어 쓰기 위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 사립학교의 재정운영에 자율성도 신장시키면서 재단의 전입금을 좀 더 유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상당히 보완시킨 것으로 여겨져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응복

지금 이상일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 결에 대한 동의가 계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일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사립학

교보조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심사보고서 작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로부터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 설명을 들어가면서 함께 작성을 하고 의결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심사보고서 작성 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 간사 이재희

심사경과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안건이 지난 1월 5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오늘 제 33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한 사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으로서는 보 조금 정산후 잔액발생, 사립학교 감사 주기, 학교운영비 반납에 관한 사항, 법령입안 형식, 안 제7조 제2항 제5호중 "달성할 희망이"라는 표현등

에 대한 질의·답변 사항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참석위원 5인중 5인 찬성으로 의결된 사항을 넣겠으며, 토론 주요내용, 소수의견 주요내용은 "해당 없음"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 위원장 김응복

지금 간사로부터 들으신 내용외에 더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상일

간사께서 설명하신 보고서 작성내용에 더 보태거나 뺄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응복

그러면 간사가 설명한 내용과 같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p>("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p> <p>더 이상 말씀하실 분이 없으므로 이번 조례심사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p>	<p>산회를 선언합니다.</p> <p>수고하셨습니다.</p> <p>(15시 45분 산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위원 : 5명 위원장 김응복, 간사 이재희, 위원 이상일, 이근수, 장충호. ○ 출석공무원 : 3명 관리국장 신재철,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 의무교육계장 이상기. ○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본회의 회의록 별첨 3 참조 ○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별첨 1. 	

(별첨 1)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4.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4. 1. 5.

○ 회부일자 : 1994. 1. 13.

다. 상정일자 : 제33회 임시회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4. 1. 13.) 상정

2. 제안설명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재정결함액 및 특수교육진흥비의 사업종료(실적)보고 방법을 개선하여 사학의 자율성 신장, 재정에 관한 책임성 확보,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 이와 관련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재정결함액의 사업종료(실적)보고 방법 개선(안 제8조 제1항)

- 현 행

기준재정수입액(세입) 및 기준재정수요액(세출)을 산출하여 부족분을 전액 지원하고 회계년도말 집행액 전액에 대한 사업종료(실적)보고를 받음.

- 개 선

기준재정수입액 및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하여 부족분을 전액 지원하고 회계년도말 사업종료(실적)보고시 학교의 재정수요액중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부분의 집행에 대한 보고를 생략함.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질 의		답 변	
질의자	주 요 내 용	답변자	주 요 내 용
간사 이재희	○ 보조금액에 대하여 연말에 정산하면 얼마정도나 잔액이 생기나?	행정과장 이상찬	○ 전년도의 예를 들면 보조한 학교가 45교인데, 교당 평균 83만 2천원 정도가 남아서 모두 반납을 받았음.
간사 이재희	○ 감사는 매년하나?	관리국장 신재철	○ 매년 정산을 받아 이상이 있을시에만 감사를 하고, 정기감사는 2년 주기로 하고 있음.
위원 이상일	○ 학교운영비를 반납하는 경우도 있나?	관리국장 신재철	○ 그러함. 부족되는 경비를 보조해 주기는 하지만 보조해 준 경비중 남는 것을 반납받다 보니까 재단의 법인전입금 확보의지가 별로 없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학교운영비의 경우는 반납받지 않도록 하므로써 법인전입금의 확보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위원장 김응복	○ 안 7조 2항 2호내지 5호 등에 조문중 일부 개정임에도 전부 개정의 형식을 취한 것은 정부의 행정법령입안 요령의 기본 형식에 부합한지? 그리고 안 8조 1항 1호 및 2호의 단서조항중 동일한 용어가 불필요하게 중복된 것은 아닌가?	관리국장 신재철	○ 이번 조례개정안은 전국의 시·도교육청 담당자들과 교육부의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협의된 안으로 교육부의 준칙이나 마찬가지로 보아 그대로 따른 것임
간사 이재희	○ 안 7조 2항 5호에 "달성할 희망이"라는 용어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행정과장 이상찬	○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으나, 그것은 세대간의 언어감각 차이로 생각됨.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결과 :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참석 5인, 찬성 5인)

6.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